

선	기관의 장
람	

시 G 보

제52호(호외) 2021. 12. 31.(금)

조 례

광양시 조례 제1871호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
광양시 조례 제1872호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5
광양시 조례 제1873호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10
광양시 조례 제1874호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16
광양시 조례 제1875호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22
광양시 조례 제1876호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119
광양시 조례 제1877호	광양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3
광양시 조례 제1878호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28
광양시 조례 제1879호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7
광양시 조례 제1880호	광양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153
광양시 조례 제1881호	광양시 공중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58

광양시 조례 제1882호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64
광양시 조례 제1883호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67
광양시 조례 제1884호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	173
광양시 조례 제1885호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188
광양시 조례 제1886호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197
광양시 조례 제1887호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3
광양시 조례 제1888호	광양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209
광양시 조례 제1889호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214
광양시 조례 제1890호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26
광양시 조례 제1891호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229

규칙

광양시 규칙 제885호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233
--------------	---	-----

회 람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797-2323, 행정2713)

광양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자치
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871호

붙임 :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개정, 폐지청구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를 말한다”를 “있는 부서를 말한다”로 한다.

제4장(제13조, 제14조)을 삭제한다.

제16조제3항 중 “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로, “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를 “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로 한다.

제18조 단서 중 “법 제26조제6항”을 “법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주관부서”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자치법규·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개정, 폐지청구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u>있는 부서를 말한다.</u>
<u>제4장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u>	<u><삭 제></u>
<u>제13조(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한다.</u>	<u><삭 제></u>

제14조(조례제정·개폐청구 처리
요령 등)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처리요령 및 처리방법 등에 관
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공포) ①·② (생략)

③ 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
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
는 조례공포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26조제
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재한다.

④ (생략)

제18조(공포방법) 자치법규 공포
는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
만, 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삭 제>

제16조(공포)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지방자치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
----- 법 제32조제
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 -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공포방법) -----
-----.
-- 법 제32조제6항-----

-----.

광양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872호

붙임 :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 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2. (생략)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 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 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제1호----- -----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
--	--

광양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873호

붙임 :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기한”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제2조제1항제4호”를 “제2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1항제5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을 “공동지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제3항 중 “세정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업무담당”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 또는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지급대상) ① ----- ----- ----- -----.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u>공무원</u>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u>공무원을 포함한다</u>)	1. ----- <u>공무원</u>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u>납기한</u> 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 ----- <u>납부기한</u>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u>제2조제1항제4호</u>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	8. <u>제2조제1항제5호</u> ----- ----- ----- -----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 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 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③ (생 략)

제4조(지급 한도) ① 제3조제1항제 1호부터 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1항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 위원회 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정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정과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

② 제1항제5호-----

-----.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 한도) ① -----

-----.

1. -----
-----공동지급-----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 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징수과장-----
-----.

제7조(위원장) ① -----

를 <u>통할</u>한다. ② (생 략)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세입징수포상금 <u>업</u> 무담당이 된다. 제10조(지급신청) ① (생 략) ② <u>전항</u>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u>총괄</u>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 ----- -----<u>업</u> <u>무담당 팀장</u>---. 제10조(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u>----- ----- -----.
---	---

광양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874호

붙임 :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우수기업 등 발굴”을 “우수기업 등 발굴 및 기업인의 날 행사 등”으로 한다.

제10조 앞에 “제4장 기업 활동 지원 등”을 삭제한다.

제20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0조를 제22조로 하고, 제18조를 제20조로 하며, 제16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4조를 제16조로 하며,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2조로 한다.

제21조를 제23조로 하고, 제19조를 제21조로 하며, 제17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5조를 제17조로 하며, 제13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1조를 제13조로 하며,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8조”를 “제20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기업인의 날)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기업인 경영 의욕 제고 및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해 매년 11월 4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중전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행사)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2. 우수 기업인에 대한 시상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7조 앞에 “제3장 기업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삭제한다.

제9조 앞에 “제3장 기업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삽입한다.

제12조 앞에 “제4장 기업 활동 지원 등”을 삽입한다.

제17조의2를 제19조의2로 한다.

제22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u>우수기업 등 발굴</u>	제2장 <u>우수기업 등 발굴 및</u> <u>기업인의 날 행사 등</u>
<u><신 설></u>	<u>제7조(기업인의 날) 시장은 기업활</u> <u>동 촉진, 기업인 경영 의욕 제고</u> <u>및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을 위</u> <u>해 매년 11월 4일을 기업인의 날</u> <u>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u> <u>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u> <u>시장이 따로 운영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8조(행사)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u> <u>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사를</u> <u>개최할 수 있다.</u> <u>1.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u> <u>육 및 세미나</u> <u>2. 우수 기업인에 대한 시상</u> <u>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u> <u>하는 행사</u>
<u>제3장 기업 등의 예우 및 지원</u> <u><신 설></u>	<u><삭 제></u> <u>제3장 기업 등의 예우 및 지원</u>
<u>제7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8조의</u>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u>제18조</u> 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u>제9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10조--</u> ----- -----. ----- <u>제20조</u> --- -----.

한다. 1. ~ 5. (생 략) <u>제8조(예우 및 지원) ①</u>시장은 <u>제7조</u>에 의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 략) 2.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유예 3. ~ 6.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기간은 <u>제7조</u>의 각호에서 규정된 기업인으로 선정된 다음 연도부터 3년으로 한다. <u>제9조</u> (생 략) <u>제4장 기업 활동 지원 등</u> <u><신 설></u> <u>제10조 ~ 제19조</u> (생 략) <u>제5장 보칙</u> <u><신 설></u> <u>제20조 · 제21조</u>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제10조(예우 및 지원) ①</u>--- <u>제9조</u> ----- ----- ----- -----. 1. (현행과 같음) 2.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 ----- 3. ~ 6. (현행과 같음) ②----- ----- <u>제9조</u>----- ----- -----. <u>제11조</u> (현행 제9조와 같음) <u><삭 제></u> <u>제4장 기업 활동 지원 등</u> <u>제12조 ~ 제21조</u> (현행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u><삭 제></u> <u>제5장 보칙</u> <u>제22조 · 제23조</u> (현행 제20조 및 제21조와 같음)
--	--

광양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875호

붙임 :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광양시에 설치하는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내 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매시장 명칭·위치·면적)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의 명칭·위치·면적은 다음과 같다.

명 칭	취급 품목	위 치	면 적(제곱미터)		
			대 지	건 물	
				건축면적	연면적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물	광양시 향만9로 69 (광양시수산물종합 유통물류센터 내)	6,303.50	2,152.92	2,316.06

제3조(거래품목) ①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거래품목은 수산물인 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조개(패)류·갑각류·해조류 및 젓갈류 등으로 한다.

② 그 밖의 품목: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과 이를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품목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은 제1호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영업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장시간은 04: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1. 매주 일요일(단 출하 성수기는 첫째, 셋째 주 휴장), 1월 1일, 설

날(3일간), 추석(3일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 시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정기휴업일 및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도매시장 공판장에 대한 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도매시장 수산물 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2장 도매시장법인

제6조(적정 수) ① 도매시장법인의 수는 2개 법인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법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 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 활동 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수산물 판매 계획, 자금 운용 계획, 조직 및 인력 운용 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11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사본
7. 제13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
8. 제14조에 따른 거래 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 금액을 말한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3항의 충족 여부

2.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에 흠이 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적정 수 범위에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며,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도매시장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 결과 5년 평가 기간 동안 3회 이상 부진 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평가 점수가 지정 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3분의 2 수준 이하인 경우
 3. 대금 정산 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정 유효 기간 내 업무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 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각 호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 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모 전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재지정 및 공모에 따른 지정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자격 등) ①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②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제11조(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최소 규모는 5억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규모를 고려하여 제1항의 자본금 최소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 또는 시행규칙 제36조에 따

른 별도의 정산창구(이하 “정산창구”라 한다)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최저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족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에는 2개월을 가산한 기준으로 한다.

제13조(보증금 반환)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제14조(순자산액 비율) ① 도매시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판장은 제외한다) 이 갖추어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현황을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시장 또는 정산창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순자산액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순자산액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순자산액을 갖추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5조(최저거래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 규모는 1억 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수산물의 계절별 출하여건, 취급품목 제한 등을 고려하여 최저거래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도

매시장법인이 인수·합병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합병 등기 신청 이전에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23조 및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3. 인수·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4.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5. 인수·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 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증명 서류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수·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비치)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내역에 관한 현금 출납 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및 정가매매·수의매매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 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겸영업무)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휴·폐업 신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제4조에 따라 정기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휴업신고서를,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업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폐업 결정 시 이를 도매시장의 게시판, 광양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휴·폐업과 관련한 별도의 업무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도매시장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경매사의 수) 도매시장 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 도매시장법인이 최소한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 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3만톤미만	3만톤이상~ 7만톤미만	7만톤이상~ 10만톤미만	10만톤이상~ 20만톤미만	20만톤이상
인 원	2	3	5	7	매 3만톤마다 1명 추가

다만, 연간 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22조(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 결정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제23조(경매사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경매사를 임명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임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시설사용 면적결정 등) ①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시장법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용도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은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시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업무정지 등)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지정조건 위반 등의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26조(전자거래)**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전자거래를 하려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시장은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③ 전자거래에 이용하는 전자문서는 시행규칙 제38조의 표준정산서·제37조의2의 표준송품장·제37조의3의 판매원표이며, 이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장 중도매인

- 제27조(중도매업 허가 등)**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3.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법 제25조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시장이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③ 법인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은 임원이 제2항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할 경우에는 허가 유효기간을 허가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제92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중도매인에게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적정 수) ① 중도매인의 적정 수는 62개소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중도매법인 수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적정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허가조건) 시장은 중도매업 허가 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최저거래금액,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의 허가조건을 정

할 수 있다.

제30조(허가절차) ①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의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가. 주주명부

나.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② 시장은 제28조에 따라 중도매인의 적정 수 범위에서 허가하며,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중도매인은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중도매업 허가 및 갱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통

가. 사진(3cm×4cm)

나. 기존 허가증 원본

2. 개인의 경우 : 은행의 잔고증명서

3. 법인의 경우

가. 정관

나. 주주명부

다.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⑥ 중도매인은 제4조에서 정한 휴업일 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폐업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최저거래 금액) 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은 개인 1천만원, 법인 2천만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수산물의 계절별 출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보증금 납부) ① 중도매인은 영업 개시일 7일 전까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도매시장법인은 그 결과를 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도매인이 납부할 보증금은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일 평균 거래금액의 7일간 거래금액 이상으로 하되, 최저금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는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는 제12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으로 본다.

제33조(보증금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34조(중도매법인의 관리) 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

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에 있어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도매법인에 대해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36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하도록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신청서를 경매 참여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매 참가 보조자는 법인의 경우 주주 및 임직원 중에서 2명을 둘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종업원 중 1명에 한하여 둘 수 있다.

제37조(중도매업의 업무정지 등) 시장은 중도매인이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8조(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중도매법인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제4장 시장도매인

제39조(적정 수) ①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는 2개 법인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도매시장법인 현황 등을 고려해 제1항의 적정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0조(지정조건) 시장은 시장도매인 지정 시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 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41조(지정절차) ①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장도매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

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 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46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 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사본
7. 제48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
8. 제45조에 따른 거래 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② 시장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제2항의 충족 여부
2. 제1항에서 정한 서류의 허위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류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에 따라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지정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범위에서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며, 지정받은 시장도매인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2조(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재지정) ① 시장도매인이 제41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받고 지정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시장도매인 재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재지정은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43조(임원의 요건) ①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
2. 임원 중 당해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② 시장도매인은 해당 임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

하여야 한다.

제44조(자본금 규모) 시장도매인의 자본금 최소 규모는 5억원으로 한다.

제45조(최저거래 금액) 시장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은 1억원으로 한다.

제46조(보증금 납부) 보증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는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도매시장법인”은“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47조(보증금 반환)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시장도매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제48조(순자산액 비율) ① 시장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 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② 시장도매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도매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장도매인은 순자산액이 미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도매인이 제1항에 따른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순자산액을 갖추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제49조(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50조(장부비치) ① 시장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 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표준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정가·수의매매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 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시장도매인의 관리) ① 시장도매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영

업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시 시장도매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휴·폐업 신고) 시장도매인의 휴업·폐업에 대해서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53조(시설사용 면적결정) ① 시장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시장도매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4조(업무정지 등) 시장은 시장도매인이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지정조건 위반 등의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매매참가인

제55조(매매참가인의 관리)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매매참가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매매참가인 등록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매매참가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으로 본다.

④ 매매참가인은 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수산물 보관을 위하여 도매시장 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56조(경매참가) ①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과 미리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보조경매 참가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으로 본다.

제6장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제57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산지유통인이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할 경우 해당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8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 등록을 예외로 할 수 있다.

1. 생산자 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 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4. 시장도매인이 법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5. 종합유통센터·수출업자 등이 남은 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6.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7. 법 제34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59조(출하자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22호서식의 출하자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하자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출하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출하자 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0조(출하예약 우대조치) 제57조와 제59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법 제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61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수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
3. 법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최소 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최소출하량 기준을 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제7장 매매 및 대금결제 방법

제62조(수탁판매의 원칙) ①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경우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②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의 매수도매거래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품목·수량·원산지·매수가격·판매가격 및 출하자
2.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

③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출하자와 협의하여 표준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거래 중 매수 또는 중개의 경우에는 매수 또는 중개금액, 매수대금 지급일, 중개상대자 등을 시장도매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표준 송품장에 기록하고 날인 하여야 한다.

제63조(상장되지 않은 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① 법 제3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않은 수산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품목은 제93조에 따른 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허가신청서 검토 결과 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7호서식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 외에 상장예외품목의 거래 장소 분리 등 그 밖에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법 제42조의2에 따라 시장은 시행규칙 제27조 외의 다른 내용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64조(매매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정가매매·수의매매를 한 경우 거래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적은 거래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명세를 도매시장 내 거래신고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법인에 납입한 보증금 또는 담보금액 한도 내에서 경매 등 매매에 참여할 수 있다.

제65조(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보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산창구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등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6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참가 시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 한도를 초과하는 사람
2. 업무정지 중인 사람

3.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경매 또는 미수금 납입을 거부하는 등 도매시장의 거래 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67조(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시장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우선 판매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량 입하품

2. 시장이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3. 예약 출하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 규격품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수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 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수산물로 인증받은 수산물

8. 파렛트 적재 출하품

제68조(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거래특례) ① 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와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기간·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별지 제31호서식의 판매 결과 보고서를 판매종료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별지 제32호서식의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②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식 : 전광판에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수량·품위 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 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 후 전광판에는 낙찰자 번호·낙찰단가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2. 거수수지식 : 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따라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 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

람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불러야 한다.

3. 기록식 : 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철판(가로 20cm, 세로 10cm)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 높이 이상 올려야 한다.

4. 서면입찰식 : 입찰대상 품목의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품종·수량·품위등급 등을 표시 또는 부른 후에 입찰 참가자가 정해진 입찰서에 성명·입찰금액·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수수지식·기록식 경매 또는 서면 입찰식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수산물의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비축 또는 수입한 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2. 그 밖에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0조(경매절차) 경매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의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경매

등 경매 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1. 반입 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품목별·등급별·개수별로 선별 진열)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출하자성명·품목·등급별 수량 기재)
3. 판매원표 작성(상장·경매 순서에 의거 출하자 성명·품목·등급·수량 등 기재)

4. 경매실시

가. 경매사의 신호에 따라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집

나. 판매원표 순서에 따라 경매실시

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라. 경매사가 출하자·품목·수량·등급 등 필요한 사항을 부름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 가격 제시

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를 부름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

제71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①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는 다음과 같다.

1. 경매개시 시각 : 오전 4시
2. 경매장소 : 도매시장 내 경매장

② 시장은 시장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72조(판매원표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지 제 33호서식의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판매일자 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 관리(문서, CD 등)하여야 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은 전자식 경매를 실시한 경우 경매내역을 실시간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전자경매 내역을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73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① 정산창구의 형식,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정산창구로 하여금 대금결제 내역 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예치자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금결제 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수탁 또는 매수

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4조(대금결제) 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제73조의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제14조에 의한 순자산액으로 같음한다)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는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결제 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한 보증금 등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제75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① 시장은 제12조 및 제46조의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손해보험 가입증서 등 포함)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지정 허가 시 우대할 수 있다.

제76조(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표준

정산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② 정산창구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 일자순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7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표준송품장 양식은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일자 순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의 확대 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8조(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시장은 제74조제3항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한 경과일부터 1일에 1천분의 1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 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79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담

합 등 부정행위가 있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제80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출하자는 자신의 출하 물품이 품질 차이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판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가격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은 전년도 상장 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3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 적립금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2항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계좌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며,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월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손실보전 신청이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판매당일의 동일품목, 동일품종, 동일규격의 당해 시장가격보다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1조(공시내용)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매시장의 게시판

이나 정보통신망에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1.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3. 경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등을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 내 반입·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식품 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검사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수산물의 출하자에 대해서는 출하 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83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에외 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내산 수산물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원이 고시하는 표준규격품을 파렛트에 적재된 상태로 반입하여 재분류 없이 경매되는 완전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서 정한 표준규격품의

품목을 제93조의 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 내 하역 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84조(시장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천분의 3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료는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다.

제85조(시설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시설, 부수시설 중 상온창고, 중도매인 점포, 중도매인 사무실, 대금정산조직 사무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

인 점포·중도매인 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시장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② 시설사용료의 납부 대상자는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①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징수하는 수산물의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수산물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한다.

③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 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제1항의 위탁수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으로 한다.

④ 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금정산조직이 징수하는 정산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정률의 경우 : 거래건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2. 정액의 경우 : 1개월에 70만원

제87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거래 물품의 가격 불균형 조정 및 출하자의 가격 보전을 위해 위탁수수료 수입에서 일부를 출하자에게 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전금 해당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8조(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별표1에 정하는 수산물거래 참가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위반하는 사람은 매매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89조(거래확인서 발급)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0조(반입물품의 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관계 법령으로 거래가 제한된 물품에 대해서는 이의 판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91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중량 단위로 거래하기가 심히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거래

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평가의 실시) ① 시행규칙 52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등은 재무제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3월 31일까지 도매시장 운영·관리 보고서 및 도매시장법인의 재무제표·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에 대해 시설사용 면적의 위치·점포수 조정·사용료의 차등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도매시장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준에 따른 실적보고서, 재무제표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가결과를 공고 등을 통하여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다.

제8장 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

제93조(목적)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산물 유통 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9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매매 및 수의매매 거래운영 특례적용 등 거래 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 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5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수산물 도매시장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출하자(단체, 개인), 소비자 등 각 대표,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도매시장 운영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7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총괄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8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9조(회의록) ①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위·성명
3. 협의 안건과 조정 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한다.

제10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장기 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0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장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102조(목적) 시장은 수산물의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103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104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수산물 도매시장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소비자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매시장 관리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6조(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총괄하며,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7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렇지 않다.

② 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8조(회의록) ① 조정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위·성명
3. 심의안건과 조정 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한다.

제10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장기 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10조(분쟁의 조정신청)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으로 인한 피해
5. 조정을 요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11조(조정 절차) ① 조정위원회는 거래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한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분쟁조정에 대한 처리 절차의 진행 중에 신청 당사자가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장 도매시장시설

제114조(부속업소의 제한) 도매시장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업소 및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1. 은행
2. 일반 및 휴게음식점
3. 가공식품 판매시설
4. 편의점

5. 그 밖의 도매시장 운영상 필요한 부대업소

제115조(부속영업의 관리)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부속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16조(시설의 용도지정 등)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부속업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그 밖의 사용 조건 등을 거래 규모, 시설 여건,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그 시설이 시장 이외의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시설별 용도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시 그 이용관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정한다.

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 함께 지정되어있는 경우 시장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소를 반·출입구를 분리하거나 물류동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구분·분리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의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117조(관리부과금의 징수) ①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기·상하수도·경비·안전점검, 그 밖의 시설사용 등에 따른 부과금(이하“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

②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1항에 따른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기간·납입금액·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기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또는 임대료 부과대상 구분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발부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른다.

⑤ 제3항의 독촉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18조(시설변경·전대의 금지) 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 및 용도 변경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 사용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빌려주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19조(시설반환) 시설사용자의 사망·법인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인·청산인·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한다.

제120조(시설사용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에게 대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무의 감독·재해의 예방·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주거나 위탁 관리하였을 때
4.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5.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경우
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파손하였을 때
7.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변경하거나 미승인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
8. 사용료·임대료·관리비 그 밖의 납부금 등을 3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
9. 법령 등 이에 근거한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제121조(대집행) 제118조 및 제119조의 경우에 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22조(보수명령)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을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보수를 명하거나 그 필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123조(시설의 관리책임)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법령에 따른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도매시장을 정돈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소독·물건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4조(시설의 처분제한)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허가권자의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125조(장비의 확보) 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비 및 용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전산처리 장비
2. 수송차량
3. 지게차등 하역장비
4. 전자식 계량기
5. 방송시설, 메가폰
6. 그 밖의 경매에 필요한 장비 및 용기

제126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 사용자에 대해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운반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출입 및 도매시장 안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127조(환경의 유지)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환경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시설물 사용제한, 출입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8조(재해 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도매시장에서 필요한 물품(사무용품·수산물을 보관 및 운반하는 용기) 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1장 보칙

제129조(도매업무의 대행)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지정취소 또는 행정처분 및 기타사유로 인해 도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도매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0조(보고 및 명령)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매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사용자에 대해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1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경매사, 산지유통인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발하는 명령·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장도매인 지정, 중도매업의 허가,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또는 경매사의 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제56조의 위반 행위별 처분 기준에 따르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③ 시행규칙 제56조의 처분기준 범위에서 시장은 위반행위의 유형을 세분하여 처분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2조(무허가 영업의 금지) ① 도매시장 내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행위 외의 무허가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매시장 안에서 무허가 영업

을 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벌칙 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133조(과징금 처분)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른다.

제134조(불법 행위 고발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 내 불법 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법 행위 고발센터는 도매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산물 거래관계자의 표지

(거래참가증)

<앞면>

거 래 참 가 증 (1)		
	사 진 ((2.5cm×3cm))	
(2)	(3)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4)		

<뒷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거래관계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광 양 시 장
1. 본 증은 거래 참여 시 반드시 패용 하여야 한다. 2. 도매시장 안에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의 지시 및 감독에 따른다. 4. 자격상실시에는 시장에게 반드시 반납하여 야 한다. 5. 분실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6.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가로 7cm× 세로10cm

※ 1. (1)란에는 경매사, 중도매인, 보조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구분표시

2. (2)란에는 신고 및 허가번호, (3)란에는 성명 기재, (4)란에는 부류명 기재

(거래관계자 표시)

거래관계자	표지구분	바탕 색	표 지 글 씨
경매사	모 자	감 색	앞 면에 황색 글씨로 “경매사”라 표시
중도매인	모 자	주된 경매 참가 도매법인별 표시	앞 면에 도매업 허가번호 표시
매매참가인	모 자		앞 면에 매매참가인 등록번호 표시

(별지 제1호서식)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법 인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시 장 명			
	위 치			
	거래품목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대표자 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 포함) 6.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정한 거래보증금·순자산액비율 및 거래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지정 조건 이행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지 정 번 호	도매시장법인지정서		
시 장 명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주 소	(전화번호 :)		
도매시장법인명		대 표 자	
지 정 기 간	부 터 까 지 (년간)		
취 급 부 류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8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광 양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법 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시 장 명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취급품목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으로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5.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 (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을 포함)		

[illegible]

[별지 제5호서식]

겸영업무 수행 보고서

도매시장법 인	법 인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도매시장명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겸영업무내용			
다른 경영주체 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	경영주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주사업내용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영업무 수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공동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자금운용계획등 포함) 1부
 2. 사업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3. 공동사업 추진 약관 1부

〔별지 제6호서식〕

휴.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명		대 표 자	
	주 소			
휴.폐업기간		사 유	공 시 방 법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도매시장법인 지정서 또는 시장도매인 지정서(폐업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경매사 임면 신고서		
임명 경매사	성 명	생년월일
	자 격 증 취 득 일	취급 품목
	임명일자	전화번호
	임명사유	
면직 경매사	성 명	생년월일
	자 격 증 취 득 일	취급 품목
	면직일자	전화번호
	면직사유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경매사 임면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개인, 법인)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법인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상호명 (법인명)	(전화번호 :)					
	참가 도매시장명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주된 경매참가 희망 도매시장법인명				
	거래품목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이력서 1부 (2) 은행의 잔액증명서 1부 2. 법인의 경우 (1) 주주명부 1부 (2)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별지 제9호서식]

허 가 번 호		중도매업허가증		(사진부착) 3cm x 4cm	
신청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상호(법인명)			형 태	개인 법인
허가사항	참가도매시장명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거 래 품 목				
	허가기간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 합니다. 허가조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광 양 시 장					

〔별지 제10호서식〕

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서 (개인, 법인)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성 명 (법인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명	(법인은 법인명)			
	참 가 도매시장명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주된 경매참가 희망 도매시장 법인명		
	거래품목	부류 : (청과, 수산) 품목 :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은행의 잔액증명서(개인의 경우에 해당)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3. 주주명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4. 허가조건 이행계획서(공통) 1부 5. 구 허가증(공통) 6. 사진(3cm×4cm) 1매(공통)					

[별지 제11호서식]

☐ 휴업 중도매업 신고서 ☐ 폐업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허가번호			취 급 부 류	
상 호				
소 재 지				
폐 업 일				
휴업기간				
사 유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0조제6항에 따라 중도매업(휴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 양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중도매업 허가증(폐업의 경우) 2. 휴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13호서식〕

시장도매인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시장도매인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시 장 명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위 치			
	거래품목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6.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14호서식〕

지 정 번 호	시 장 도 매 인 지 정 서		
시 장 명 칭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주 소	(전화번호 :)		
시장도매인명		대 표 자	
지 정 기 간	부터 까지 (년간)		
취 급 부 류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1조제6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광 양 시 장			

〔별지 제15호서식〕

시장도매인 재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시장도매인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시 장 명	광양시 수산물도매시장		
	위 치			
	거래품목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으로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이력서 1부 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 포함)				

〔별지 제16호서식〕

매매참가인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참가시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품목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 (2.5cm×3.5cm) 2매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17호서식]

매매참가인 등록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등록번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변 경 사 항		종 전		변 경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 등록 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등 록 번 호				사 진 (3cm×4cm)
□□ - □□□□				
년도 - 일련번호 매매참가인 등록증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참 가 시 장 명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주거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거 래 품 목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5조제2항에 따라 매매참가인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별지 제19호서식]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참가시장명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취 급 부 류 (주 품 목)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사진(3cm×4cm) 1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사본(법인의 경우) 1부				

산지유통인 등록 변경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산지유통인 등록증	
증 명 사 진 (2.5cm×3cm)	등록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품 목 :
	등록일자 :
광 양 시 장	

[뒷쪽]

년, 월, 일	기재사항 변경	확인인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		

[별지 제23호서식]

신고번호 제 호

사 진
(3cm×4cm)

출 하 자 신 고 증

성 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취급부류(주품목) :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9조제2항에 따라 출하자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별지 제24호서식〕

매수도매거래 결과 보고서						
도매시장법인명					대 표 자	
기 간						
품 목	단 위	수 량	매수가격	판매가격	출하자	
					원산지	출하자
매수하여 도입한 사유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2조제2항에 따라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5호서식]

표 준 송 품 장											
◆ 출하일시 : . . .					◆ 도착일시 : . . .						
수 신		귀하									
아래 수산물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거래형태		[]매 수			[]위 탁		[]중 개				
매매방법		[]경매·입찰			[]정가·수의매매						
◆ 출하 내역											
원산지	품목 및 품종	품질인 증 번호	우수수산물 관리제도인증번호		거래 단 량	등급 및 수량					비고
			이력추적 관리번호			특	상	중	하	계	
합 계											
운 입	입금 : 원정				차 량	기 사 명					
	(원)					차량번호					
출하자 · 산지유통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송금은행						
					송금계좌						
					예 금 주						
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											
매수 또는 중개금액			매수대금 지급일		중 개 상대자						
수령자	(서명 또는 인)										

						처리기간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중도매업 허가번호				점포번호 및 면적		
	주거래법인				전화번호	점포: 자택:	
허가 신청 사항	품목						
	취급계획	물량			금액		
	기간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 예외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 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자본금 확보 증명서류 1부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cm×4cm) 1매							

〔별지 제27호서식〕

허가번호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			사 진 (3cm×4cm)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중도매업 허가번호		상 호		
주거래법인 및 번호		전화번호	(자택)	
			(점포)	
거래장소				
허가기간				
거래품목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 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별지 제28호서식〕

정가매매(수의매매)결과 보고서

도매시장명						
도매시장법인명				대표자		
일 자	년 월 일					
품 목	단 위	수 량	금 액	출하자	판매상대자	매매사유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4조제2항에 따라 정가매매 (수의매매)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9호서식]

월별 거래실적 보고서

(기간 : . . . ~ . . .)

허가 및 지정번호 (등록번호)	성 명	상 호	거래물량	거래금액	미수금 잔 액	담보금액

〔별지 제30호서식〕

거래특례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품 목	수 량	출 하 자	판매방법	기 간
신청이유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31호서식]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 보고서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품 목	수 량	출하자	판매가격	판매방법	매수인
거래특례 판매이유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8조제2항에 따라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

거래성립 최저가격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성명(출하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사 항					
품 목	중량 및 규격		수 량	최저가격	비 고
경매(입찰) 입회자					
입회자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 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매시장법인명 귀하					

[별지 제33호서식]

관리번호		판매원표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					
판매일시					년 월 월(00:00)		정 산	검 산	기 록	경매사
산 지 명										
출하총량						코 드				
번 호	출하자	품 목	중량 및 규격	등 급	수 량	가격 (경락)	총판매 대금	낙찰자번호 (매수인)		
운 임 선급금				하역 및 선별비	(도매시장법인명 또는 시장도매인명)					

〔별지 제34호서식〕

표 준 정 산 서

정산일자				상 호 명					
출하자	성 명	귀하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점 포									
귀하께서 출하한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인)									
년	월	일	품목 및 품종	단위별 단 량	등 급	수 량	단 가	총거래 금 액	매수인
송금내역		송 금 액						수수료	
		은 행 명						운 임	
		계좌번호						하역비	
		예 금 주						선급금	
거래방법	매수 (), 위탁 () 중개 (), 기타 ()						쓰레기 유발부담금		
							지불금액		

[별지 제35호서식]

거 래 현 황 판

(도매시장법인명 또는 시장도매인명)

(년 월 일)

산 지	품 목	단 위	등 급	가 격	거 래 량

년 일 일

[illegible]

[별지 제37호서식]

일 일 시 황 표

확 인 자 : (인)

작 성 자 : (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명)

년 월 일

부 류	품 목	거래 단위	등 급	경락또는 1차도매가격		거래동향	주출하자
				최 저	최 고		

※ 작성 품목은 계절별 반입 상황에 따라 변경됨.

〔별지 제38호서식〕

거 래 확 인 서

품 목	단 위	반출물량	가 격	반출지(대상)	반출차량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9조에 따라 상기 물품에 대해 본 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 시장도매인)에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광양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21년 12월 31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876호

붙임 :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및 정책 개발,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증진계획은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광양시 문화예술진흥 중기 종합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위원회)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예술인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창작공간 지원) ①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민
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877호

붙 임 : 광양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양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광양 시민의 노래

이지수 작곡
서동열, 이승민 작사

A 힘차고 활기차게 (♩ = c.132)

D A/C# Bm F#A

백운산정기속__에 샘솟는__기상__
섬진강줄기따__라 펼쳐진__인정__

5 G D/F# Em7 A

슬기와지혜모__아 가꿔온__터전__
참되고복된문__화 꽃피운__터전__

9 D A/C# Bm F#A

내고향찬란하__게 빛나는__광양__
떠오른태양처럼 눈부신__광양__

13 G B7 E Asus4 A

모두가꿈꾸는__ 세상__으로__ 외지
미래가활기찬__ 세상__으로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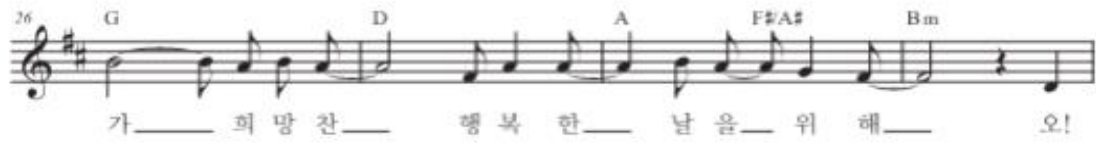
B

G A D A/C# Bm

자__드높이__ 광양의__미래__위해__ 펼치

22 G D A

자__세계로__ 우리__광양__ 모두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광양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u> (별표) [별표] 서인의 노래 시·영·구·박사 김동원 작곡 	<u>광양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u> (별표) 광양 시민의 노래 이재수 작곡 서동열, 이순연 작사 
[별표] 	

광양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21년 12월 31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878호

붙임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영 제22조제5항”을 “법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31조제3항 전단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를 “현금으로 예치하되”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6조제1항”을 “영 제76조”로 한다.

제5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제5항”을 “법 제77조”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서기 약간인을”을 “서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32조제1호 관련)”을 “(제32조제1항제1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32조제2호 관련)”을 “(제32조제1항제2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32조제3호 관련)”을 “(제32조제1항제3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32조제4호 관련)”을 “(제32조제1항제4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32조제5호 관련)”을 “(제32조제1항제5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제32조제6호 관련)”을 “(제32조제1항제6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32조제7호 관련)”을 “(제32조제1항제7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9의 제목 중 “(제32조제8호 관련)”을 “(제32조제1항제8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제32조제9호 관련)”을 “(제32조제1항제9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목 중 “(제32조제10호 관련)”을 “(제32조제1항제10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2의 제목 중 “(제32조제11호 관련)”을 “(제32조제1항제11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3의 제목 중 “(제32조제12호 관련)”을 “(제32조제1항제12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4의 제목 중 “(제32조제13호 관련)”을 “(제32조제1항제13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5의 제목 중 “(제32조제14호 관련)”을 “(제32조제1항제14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6의 제목 중 “(제32조제15호 관련)”을 “(제32조제1항제15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7의 제목 중 “(제32조제16호 관련)”을 “(제32조제1항제16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8의 제목 중 “(제32조제17호 관련)”을 “(제32조제1항제17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9의 제목 중 “(제32조제18호 관련)”을 “(제32조제1항제18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20의 제목 중 “(제32조제19호 관련)”을 “(제32조제1항제19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21의 제목 중 “(제32조제20호 관련)”을 “(제32조제1항제20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22의 제목 중 “(제32조제21호 관련)”을 “(제32조제1항제21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23의 제목 중 “(제32조제22호 관련)”을 “(제32조제1항제22호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과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 경우에는 2차공고시 제출된 의견은 타당할 경우 재공람·열람 없이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재공고·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 ----- ----- ----- ----- ----- ----- ----- -----.
②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② (생략) ③ 이행보증금은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59조제3항에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현금으로 예치하되----- -----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 제40조제4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46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제1항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
구(항만)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5. (생략)

제58조의3(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제7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를 관장하는 주무과장과 주무담
달이 된다.

③ · ④ (생략)

-----.

-----.

제46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

1. ~ 15. (현행과 같음)

제58조의3(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

-----.

1. · 2. (현행과 같음)

제70조(간사 및 서기) ① -----

----- 서기를 -----.
② -----

주무팀장-----.

③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2]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호 관련](#))

[별표 3]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2호 관련](#))

[별표 4]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3호 관련](#))

[별표 5]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4호 관련](#))

[별표 6]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5호 관련](#))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6호 관련](#))

[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7호 관련](#))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8호 관련](#))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9호 관련](#))

[별표 11]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10호 관련](#))

[별표 2]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3]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4]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5]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 6]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5호 관련](#))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6호 관련](#))

[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7호 관련](#))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8호 관련](#))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9호 관련](#))

[별표 11]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10호 관련](#))

[별표 12]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1호 관련](#))

[별표 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2호 관련](#))

[별표 14]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13호 관련](#))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4호 관련](#))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5호 관련](#))

[별표 17]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6호 관련](#))

[별표 18]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7호 관련](#))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8호 관련](#))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19호 관련](#))

[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20호 관련](#))

[별표 22]

[별표 12]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11호 관련](#))

[별표 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12호 관련](#))

[별표 14]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13호 관련](#))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14호 관련](#))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15호 관련](#))

[별표 17]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16호 관련](#))

[별표 18]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17호 관련](#))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18호 관련](#))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19호 관련](#))

[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20호 관련](#))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21호 관련](#))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22호 관련](#))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21호 관련](#))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항제22호 관련](#))

광양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
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21년 12월 31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879호

붙임 :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6조제1항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5호 중 “영 16조제5항제3호”를 “영 제16조제5항제3호”로 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1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 ⑦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⑨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3조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4조에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

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입증지로”를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별표 6 중 위반행위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위반행위 제1호란 다음에 제1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13만원

- 0.6㎡ 이상 0.8㎡ 이하	22만원
- 0.9㎡ 이상 1.0㎡ 미만	32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42만원
- 1.4㎡ 이상 1.6㎡ 이하	50만원
- 1.7㎡ 이상 2.0㎡ 미만	64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75만원
- 2.4㎡ 이상 2.6㎡ 이하	100만원
- 2.7㎡ 이상 3.0㎡ 미만	129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8만원
- 0.6㎡ 이상 0.8㎡ 이하	12만원
- 0.9㎡ 이상 1.0㎡ 미만	14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25만원
- 1.4㎡ 이상 1.6㎡ 이하	33만원
- 1.7㎡ 이상 2.0㎡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58만원
- 2.4㎡ 이상 2.6㎡ 이하	67만원
- 2.7㎡ 이상 3.0㎡ 미만	79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8만원
- 1.1㎡ 이상 2.0㎡ 이하	12만원
- 2.1㎡ 이상 3.0㎡ 미만	14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22만원
- 3.8㎡ 이상 4.4㎡ 이하	25만원
- 4.5㎡ 이상 5.0㎡ 미만	32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42만원
- 6.1㎡ 이상 8.0㎡ 이하	58만원
- 8.1㎡ 이상 10.0㎡ 미만	75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5천원
- 21장 이상	장당 42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3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1의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별표 8 제목 중 “유동불법광고물”을 “불법 유동광고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신 설>

4. ~ 6. (생 략)

7.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
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
고하고 광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
다.

1. · 2. (생 략)

<신 설>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

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
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
만인 경우

2. ~ 4.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
지와 같음)

7.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

--.

1. · 2. (현행과 같음)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
는 경우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

의 특례) ①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 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으며, 별표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의2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시장은 영 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광양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자게시대를 교통신호기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의 특례) ①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

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

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영 제16조제5항제3호----

-----.

② (생략)

제9조(주민협의회 운영) ① ~ ③
(생략)

<신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신설>

<신설>

① 법 제7조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2. (생략)

② ~ ④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주민협의회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 -----

-----.

1. 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⑦ 심의위원회는 심의안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신 설>

<신 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⑨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

-----.

1. (생 략)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
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③ (생 략)

<신 설>

⑤ · ⑥ (생 략)

<신 설>

1.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
한 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
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
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
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분
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

2. ~ 4. (생 략)	(생 략)	(생 략)
---------------	-------	-------

[별표 8]

유동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
(제28조 관련)

구 분		보 상 금
종 류	규 격	
현 수 막	면적 4㎡이상	1,000원 / 장
	면적 4㎡미만	500원 / 장
벽 보	30cm×40cm(A4용지)초과	20원 / 장
	30cm×40cm(A4용지)이하	10원 / 장
유해전단	30cm×40cm(A4용지)이하	10원 / 장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8]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
(제28조 관련)

구 분		보 상 금
종 류	규 격	
현 수 막	면적 4㎡이상	1,000원 / 장
	면적 4㎡미만	500원 / 장
벽 보	30cm×40cm(A4용지)초과	20원 / 장
	30cm×40cm(A4용지)이하	10원 / 장
유해전단	30cm×40cm(A4용지)이하	10원 / 장

광양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880호

붙임 : 광양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3조”를 “「항공사업법」 제65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여수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별지 서식 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항공운송사업 진흥법</u> 」 제3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항공사업법</u> 」 제65조-----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 <u>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란 「 <u>항공운송사업 진흥법</u> 」 제2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여수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 <u>항공법</u> 」 제2조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자와 「 <u>항공법 시행규칙</u> 」 제15조에 따른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 <u>항공운송사업자</u> ”란 「 <u>항공사업법</u> 」 제2조제8호에 따라 여수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u>국내항공운송사업자</u> , <u>국제항공운송사업자</u> 및 <u>소형항공운송사업자</u> 를 말한다.

[별지 서식]

재정지원금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상 호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허가번호		
	주 소 (사무소 소재지)				
신청금액	금	원 (₩)			
산출내역					
운항노선		운항횟수			
운항기간		여객운임			
탑승인원		운항기종 및 좌석수			
운항노선 별 탑승내역					
「광양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거래은행		계좌 번호		예금주	
구비서류 1. 재정지원 요청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별지 서식]

재정지원금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상 호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허가번호		
	주 소 (사무소 소재지)				
신청금액	금	원 (₩)			
산출내역					
운항노선		운항횟수			
운항기간		여객운임			
탑승인원		운항기종 및 좌석수			
운항노선 별 탑승내역					
「광양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거래은행		계좌 번호		예금주	
구비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광양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881호

붙임 :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규칙 등”을 “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둔다”를 “두되, 비상설로 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 및”을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로,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망실하였”을 각각 “분실하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u>규칙</u> 등에 위반하였을 때 2. · 3. (생략)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 ----- ----- -----. 1. ----- <u>규칙</u> ----- ----- 2. · 3. (현행과 같음)
제10조(구성) ①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공중목욕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u>둔다</u> . ② (생략) ③ <u>위원장 및 부위원장</u> 은 위원중에서 <u>호선한다</u> .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 신설> 1. ~ 5. (생략) <신설>	제10조(구성) ①----- ----- ----- ----- <u>두되, 비상설로 운영한다</u> . ② (현행과 같음) ③ <u>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u> , -- -- <u>호선(互選)한다</u> . ④----- ----- . <u>의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 1. ~ 5. (현행과 같음) ⑤ <u>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u>

제12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공무원인 위원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3.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기타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 ④ (생략)

제1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

<삭 제>

<삭 제>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회의) <삭 제>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 ⑤ (생략)

제26조(손해배상 등) ①목욕장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장 시설의 훼손 또는 비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목욕장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②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손해배상 등) ①-----

----- 분실하였-----

-----.

②-----
----- 분실하였-----

-----.

③ (현행과 같음)

광양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882호

붙임 :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진료비 등 징수)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진료비 등을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5조(진료수가) 보건진료소에서</u> <u>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u> <u>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u> <u>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u> <u>보험수가기준 등 보건진료소 진</u> <u>료수가를 적용 징수한다.</u>	<u>제5조(진료비 등 징수) 보건진료</u> <u>소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는</u> <u>「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u> <u>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u> <u>으로 진료비 등을 징수한다.</u>

광양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883호

붙임 :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광양시”를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광양시”를 “시”로 한다.

제4조제13호 중 “위한 식품영업”을 “위한”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광양시”를 “시”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무농약농수산물”을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음식분야의 광양시 명인”을 “음식분야의 우수한 식품기능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광양시”를 각각 “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농특산물”이란 <u>광양시</u> 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등을 말한다.	1.----- <u>광양시(이하 “시”라 한다)</u> ----- -----.
2.“식품”이란 「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식품”이란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3.“식품산업”이란 「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6.“식품영업”이란 제1호 및 제2호를 주재료로 「 <u>식품위생법 시행령</u> 」 제21조제1호·제2호·제8호가목·나목·바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사업비 지원) ① 농특산물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외소득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u>광양시</u> 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제4조의 사업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 지원) ① ----- ----- ----- ----- <u>시</u> ----- -----.

② (생 략)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2. (생 략)

13. 제13조에 따른 광양명인 지정
과 지정당시 품목의 생산을 위
한 식품영업 시설개선과 홍보지
원

14. ~ 16. (생 략)

제10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생 략)

② 시장은 농특산물과 이를 이용
한 가공식품 등을 방문객이나 광
양시에서 교류 또는 업무협약차
방문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
관·단체에게 홍보용 농특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
구매) 시장은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1. (생 략)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사업) -----

-----.

1. ~ 12. (현행과 같음)

13. -----

-- 위한 -----

14. ~ 16. (현행과 같음)

제10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시-----

-----.

제11조(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
구매) -----

-----.

1. (현행과 같음)

2. -----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
기식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
농약농수산물 등 인증을 받은
제품

3. ~ 6. (생 략)

제13조(농특산물 가공·음식 분야
명인 육성) ① 시장은 농특산물의
명품화와 지역의 음식문화를 선도
하기 위해 농특산물 가공과 음식
분야의 광양시 명인을 발굴하여
이를 광양명인으로 지정하여 육성
지원할 수 있다.

② 농특산물 가공 분야의 광양명
인 지정 대상은 농특산물의 명품
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
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소와 영업장이 광양시에 있
으면서 농특산물을 원료로 5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상품을 생
산하고 있는 사람

2. (생 략)

③ 음식분야의 광양명인 지정 대
상은 광양음식 발전에 이바지할

----- 무농
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

3. ~ 6. (현행과 같음)

제13조(농특산물 가공·음식 분야
명인 육성) ① -----

----- 음식분야의 우수한 식품기
능인-----
-----.

② -----

-----.

1. ----- 시 -----

2. (현행과 같음)

③ -----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소와 영업장 소재지가 광양
시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5년 이
상계속하여 해당 음식을 생산하
고 있는 사람

2. · 3. (생 략)

④ · ⑤ (생 략)

-----.

1. -----
시-----

2. · 3.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광양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21년 12월 31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884호

붙임 :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를 “「물환경보전법」에”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 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공동처리구역”을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하수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 중 “배수를 중단하고자”를 “배수설비를 변경, 중지 및 일시정

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법 제3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을 “법 제32조제9항”으로 한다.

제15조 중 “「광양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서면”을 “서면”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공동처리구역으로 추가 편입된 사업자가 공동처리구역으로”를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추가 편입된 사업자가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일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광양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를 “60일 이내에”로 한다.

제5장 제목 중 “기본부과금”을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기본부과금의 부담)”을 “(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부과금”을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을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부과금”을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부과금”을 “기본배출부과금”으로, “요청등”을 “요청 등”으로 한다.

제22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법 제49조의6의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3월”을 각각 “3개월”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2조”를 “법 제72조”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하단 비고 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제5조”를 “제10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증가산금을 적용하였거나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별도 배출허용 기준(제11조 관련)

광양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처리장 오·폐수 관거로 배출하는 사업자(장)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수질오염물질	BOD	TOC	SS	T-N	T-P
기준(mg/L)	300	170	350	100	10

[별표 2]

유지관리비 산정 방법(제13조 관련)

업체부담금 = 운영비(BS) + 적립충당금

$$\bullet \text{ 운영비(BS)} = M_1 \times \left[0.3 \frac{BLi}{\sum BLi} + 0.7 \frac{f(Li)}{\sum f(Li)} \right]$$

BS : 월간 운영비 = 인건비 + 직접경비 + 간접경비

M_1 : 월간 업체 부담금중 적립충당금을 제외한 금액

BLi : 비용부담 대상자중 폐수배출업소 오염 부하량

(※ 오수 배출업소는 제외)

BLi : (BOD + TOC + SS + T-N + T-P) × 유량

f(Li) : 비용부담 대상자중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량

$$f(Li) : Q_1 \times \left(\frac{BOD + TOC}{2} + SS + T-N + T-P \right)$$

Q_1 : 비용부담 대상자의 오·폐수 오염 부하량

• 적립충당금

계	대지면적(㎡)	건축면적(㎡)	종업원수(명)	오염부하량(f(Li))
100%	20%	20%	15%	45%

[별표 3]

오염부하량 산정 방법(제13조 관련)

오염부하량 = 배출량 x 배출농도

• 배출량

유량계 설치 형태	설치	미설치	기타 감면량 인정
배출량 산정	실측	상수사용량의 80%	(상수도사용량-감면량)의 80%

• 배출농도

- 폐수업체 : 실측치 적용
- 오·하수업체 : 기본계획에 의한 오·하수 계획 농도

항 목	BOD	TOC	SS	T-N	T-P
농도(mg/L)	197	62	181	41	5

- 분 료 : 오수업체 계산방식을 준용하되 배출농도는 실측치 적용

[별표 5]

기본배출부과금 산정 방법(제21조 관련)

업체별 기본배출 부과금 = 기본배출부과금 × [0.7A + 0.3B]

$$A = \frac{\text{해당업소 오·폐수오염부하량}}{\text{업소 전체 오·폐수오염부하량}}$$

$$B = \frac{\text{폐수해당업소 오염부하량}}{\text{폐수배출업소 전체 오염부하량}}$$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물환경보전법」에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조(처리구역) 본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제3조(처리구역) ----- ----- 「물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 공공폐수처리구역-----.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생략) ② 제1항의 배수설비를 설치 또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오수 배수설비의 경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 별지7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0조(사용개시등 신고) 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오·폐수를 배수하고자 할 때는 배수 5일전 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배출기준) ① 처리구역내 사업자(장)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배수하여야

----- 「하수도법 시행규칙」 -----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개시등 신고) -----

----- 배수 설비를 변경, 중지 및 일시정지 -----
-----.

제11조(배출기준) ① -----
----- 법 제32조 -----

----- 「물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
-----.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표 1
과 같이 별도 배출허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제15조(유지관리비의 부과) 시장
은 당월분의 부담금을 매월말까
지 산정하고 익월 10일까지 각
사업자(장)에게 「광양시 재무
회계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
거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3조2항에 따라 공동처리구
역으로 추가 편입된 사업자가
공동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 이
전에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설치
하여 발생한 오·폐수를 처리한
경우에는 시설설치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8조(시설설치비의 부과방법)

① 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

② -----
----- 법 제32
조제9항-----

-----.

제15조(유지관리비의 부과) ----

----- 서면-----

-----.

제17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공폐수처리
구역으로 추가 편입된 사업자가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시설설치비의 부과방법)

① -----

한 시설설치비를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납부 고지 하되 납부기한을 다
음 기준에 따라 분할 고지토록
하고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
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 5 장 기본부과금의 부담

제20조(기본부과금의 부담) ① 「수
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에 의한 기본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기본부
과금은 시장이 원인분석 후 입
주기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영산강유역환
경청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제21조(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 ①
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은 별표

----- 60일 이내에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기본배출부과금 -----

제20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 ①
「물환경 보전법 시행령」 제41
조에 의한 기본배출부과금-----
-----.

1. ~ 3. (현행과 같음)

② ----- 기본배
출부과금-----

-----.

제21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① 기본배출부과금-----

5의 부과금 산출기준에 의하여 제15조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기본부과금 징수 유예 요청 등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재투자 적립충당금에서 선납할 수 있으며, 제20조제1항3호에 해당될 경우 협의회와 협의하여 적립충당금에서 전부를 납부할 수 있다.

제22조(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생략)

② 체납된 부담금을 독촉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항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생략)

-----.

② ----- 기본배출부과금 -----
-- 요청 등 -----

-----.

제22조(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자(장)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제24조(배출량의 인정) ① 시장은 비용부담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배출되는 폐수와 생활하수량 또는 오염부하량을 직접 조사하되, 유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고장시 등에는 고장직전 3월 실적 평균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장직전 3월 실적평균의 적용은 2회에 한하며 2회를 초과한 사업장 및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용수사용량의 80%를 배출량으로 적용한다.

③ ~ ⑦ (생략)

제28조(배수중지 처분) ①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④ -----

법 제49조의6의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배출량의 인정) ① -----

-- 3개월 -----.

② -----
----- 3개월 -----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배수중지 처분) ① -----
법 제72조-----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폐수관거를 통한 폐수 및 생활
오수의 배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생 략)

(별지 제1호 서식)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5일
설 치 자	① 회 사 명				
	② 업 종		③ 주생산품명		
	④ 성명(대표자)		⑤ 생년월일		
	⑥ 주 소		(전화번호:)		
설 치 신 고 내 역	⑦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배출		
	⑧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 량	재질	염화비닐관, 주철관, 흙관, PC, 도기, 기타	접속방법	
		평균 관경	∅ mm	맨홀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m
	⑨ 설치위치		광양시 태인동 번지		
~ 오수 폐수 공통 ~	⑩ 배출수량		m ³ /일		
	⑪ 공사 착공일	년 월 일	⑫ 공사준 공 예정일	년 월 일	
	⑬ 공사 실시 방 법 및 시공자		⑭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폐수배출업소	배출 주폐수 성상		처리 공법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제5조에 따라배수설비의 설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 명) 광 양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㉔ 공통사항-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㉕ 폐수배수설비 설치 승인 1. 처리공정도 1부 2. 원료 사용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 비고1 : ⑩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
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
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비고2 : 오수 배수설비의 경우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별지 7호 서식 사용 가능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5일
설 치 자	① 회 사 명				
	② 업 종		③ 주생산품명		
	④ 성명(대표자)		⑤ 생년월일		
	⑥ 주 소		(전화번호:)		
설 치 신 고 내 역	⑦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배출		
	⑧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 량	재질	염화비닐관, 주철관, 흙관, PC, 도기, 기타	접속방법	
		평균 관경	∅ mm	맨홀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m
	⑨ 설치위치		광양시 태인동 번지		
~ 오수 폐수 공통 ~	⑩ 배출수량		m ³ /일		
	⑪ 공사 착공일	년 월 일	⑫ 공사준 공 예정일	년 월 일	
	⑬ 공사 실시 방 법 및 시공자		⑭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폐수배출업소	배출 주폐수 성상		처리 공법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제5조에 따라배수설비의 설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 명) 광 양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㉔ 공통사항-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㉕ 폐수배수설비 설치 승인 1. 처리공정도 1부 2. 원료 사용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 비고1 : ⑩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
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비고2 : 오수 배수설비의 경우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별지 7호 서식 사용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7. 2. 1.>

배수설비 (변경, 중지, 일시정지) 신고서			
신 고 인	상 호	전 화 번 호	
	성 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사업장소재지			
업 종		주 생 산 품	
사 유			
내 용			
일 시	~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 (변경, 중지, 일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			
※ 비고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7. 2. 1.>

배수설비 (변경, 중지, 일시정지) 신고서			
신 고 인	상 호	전 화 번 호	
	성 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사업장소재지			
업 종		주 생 산 품	
사 유			
내 용			
일 시	~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제10조에 따라 배수설비 (변경, 중지, 일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			
※ 비고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광양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885호

붙 임 :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비밀로 지정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

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일직·숙직)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무인경비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당직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단, 필요할 경우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휴가 등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

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③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의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4. 장기재직휴가는 네 번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⑧ 의장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공무원에게 퇴직 신청일부터 30일간의 퇴직 준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⑨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⑩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시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4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⑪ 의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광양시의회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
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
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
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
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의회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가 담당
한다.

[별표 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0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2조 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광양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886호

붙 임 :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되, 월액여비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광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광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광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별표 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의장 수행업무(수행비서·차량운행)에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 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 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 한 일수는 제외한다.
	의회 버스 운행에 종사하는 공무원	

-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광양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887호

붙임 :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광양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광양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광양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광양시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광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질병, 육아, 간병, 노조전임 휴직은 제외한다)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 ③ 의장은 광양시의회 의원이나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고, 그 밖에 광양시의회에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외 문화탐방(배낭여행) 지원
2. 가족과 함께하는 국내·외 역사문화탐방, 효도 견학 등 지원
3. 직장 동호회, 직원 체육행사 등 조직 활성화 활동 지원

4.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5. 임신·출산 및 보육지원(편의물품, 출산용품, 장려금 지원 등)
6. 행정배상공제 가입, 휴양시설(리조트) 지원
7. 퇴직예정자·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8.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사업
9.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의장은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회계처리의 특례)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점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제9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④ 협의회는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의회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지역 주민
2. 지역의 행정·경제·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협의회는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담당팀장이 맡는다.

제10조(광양시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광양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9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888호

붙 임 : 광양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광양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장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은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주민
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889호

붙임 :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광양시와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광양시의회와 광양시 홈페이지, 광양시보, 광양시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
조례의 [] 개정 청구서
[] 폐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	()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신청 []필요없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청구인명부의 표지)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 수 : 명

전라남도 광양시 []읍·면·동([]책 중 []권)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 방법

- "괄호()" 안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청구인명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sqrt{\quad}$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 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대상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
의
의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의회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광양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890호

붙임 :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제53조, 제54조, 제56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4조”를“제5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회의일수와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53조, 제54조, 제56조 --- ----- ----- ----- -----.
제3조(정례회) ①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제3조(정례회) ① ----- ----- 제53조 ----- -----.

광양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891호

붙임 :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사.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자격·윤리심사”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① (생략)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 마. (생략) <u><신설></u> <u><신설></u> 2. · 3. (생략) ③ (생략)	제4조(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u>이의신청에 관한 사항</u> 사.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 <u>하에 관한 사항</u> 2.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특별위원회) ① ~ ③ (생략) <u>④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재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 것으로 본다.</u> ⑤ · ⑥ (생략)	제8조(특별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제></u>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윤리특별위원회) ①의회는 의원의 <u>자격 · 윤리심사</u> 및 징계	제9조(윤리특별위원회) ①----- ---- <u>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u>

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 ④ (생략)

준수 여부 -----

-----.

② ~ ④ (현행과 같음)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규칙 제885호

붙임 :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을 삭제한다.

제19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장 주민의 조례 제정 · 개폐</u> <u>청구</u>	<u><삭 제></u>
<u>제11조(청구요건의 공표) ①광양</u> <u>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u> <u>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u> <u>하여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u> <u>관할구역 안의19세 이상 주민총</u> <u>수(「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u> <u>른 선거권이 없는자를 제외한</u> <u>수)와 조례 제13조에 따른 연서</u> <u>주민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u> <u>표하여야 한다.</u> <u>②제1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u> <u>시홈페이지 등에 게재 또는 게</u> <u>시한다.</u>	<u><삭 제></u>
<u>제12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u> <u>시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u> <u>(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u> <u>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u> <u>조례의 제정 · 개폐청구 및 청구</u> <u>인의 대표자증명 교부 신청을</u> <u>받는 때에는 대표자가 19세 이</u> <u>상의 주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u>	<u><삭 제></u>

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교부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등을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명요청권의 위임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청구사항 공표) 시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청구인명부를 제출(이하 “청구”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 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제11조제2항에 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청구인명부 열람 및 확인)

<삭 제>

①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시 및 읍·면·동사무소의 공개된 장소에 명부원본 또는 그 사본을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에는 명부 전체를 비치하고 읍·면·동사무소에는 해당 읍·면·동의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동안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시의 19세 이상의 주민인지, 중복서명 및 서명요청기간 내의 서명인지 등 유효서명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된 무효서명과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에 서명의 무효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열람하는 청구인 명부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법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 및 심사할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이유있음 :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
2. 이유없음 :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제15조(청구요건 심사 등) 시장은 청구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결정이 완료된 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여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삭 제>

한다.

제16조(조례안의 시의회에의 부의) ①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청구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광양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부의 하여야 하며 그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에 그 의견을 덧붙여 시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19조(심의회 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2. (생략)

3. 주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5. (생략)

<삭 제>

제19조(심의회 의 기능) -----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4.·5. (현행과 같음)